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1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7월 9일, 서삼석의원 등 19인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1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8.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2024.8.27.)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2024.11.21.)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1차 안전조정위원회(2024.11.21.)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1.)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서삼석의원)

현행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하 “초과생산량”이라 함)이 생산량의 3%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한 경우 또는 그 외의 요인으로 수확기 등의 미곡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등에 농업협동조합 등으로 하여금 미곡의 초과생산량에 대한 차이만큼 매입하게 할 수 있음.

그러나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쌀 예상생산량(약 368.4만 톤)이 전년대비 2.17%가량 감소하였으며, 2024년 쌀 추정수요량은 전년 대비 1만 3,000톤 늘어난 362만 톤으로 증가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벼 재배 면적을 줄일 계획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선제적인 시장격리 즉, 미곡 초과생산량 매입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음.

또한 지난 2020년 쌀 1포대 당 목표가격으로 20만원으로 규정했지만, 임금·유류 등 물가가 상승했음에도 수확기인 10월 말 평년 가격은 19만 6,656원 수준으로 목표가격을 돌파하기는커녕 2024년 5월 기준 18만원 이하로 무너짐.

특히 현 정부는 지난 제21대 국회 당시 국민의 요구로 마련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쌀 과잉 공급 우려로 거부권을 행사하며 식량 정책에 대한 무관심한 대처를 확인함.

이에 종전의 미곡의 초과생산량 이하를 매입하게 할 수 있는 요건

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격리 조치를 임의적으로 추진했던 현행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의무화를 통해 초과생산량에 해당하는 물량을 매입하게 함으로써 식량자급 최후의 보루인 미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개정안은 쌀 생산의 과잉 및 소비 위축 등으로 인한 쌀 가격 하락에 대하여 정부로 하여금 의무적 시장격리, 양곡의 시장가격과 기준 가격 간의 차액 보전, 양곡의 선제적 수급조절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미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타 개정안과 유사하므로,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음.

다만, 추가적인 내용으로 ① 공공비축양곡 비축 물량의 확대, ②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공공비축양곡 비축·운용 비용 지출 등을 규정하고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이원택)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안전조정위원회 심사내용

(안전조정위원회 위원장 주철현)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 조정안으로 의결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7.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8.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